

2026년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관련교육자료

수지초등학교

1 개요

1. 배경

- ☐ 감사관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익명제보시스템과 각종 민원 통해 학교 교직원의 부당한 초과근무 사례 안내
- ☐ 이에 초과근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

2. 관련

- ☐ 202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 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시간외근무의 이해

1. 시간외근무

- 1)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 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2)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3)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
- 4)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 ☞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4시간만 유효한 시간외근무

3.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
-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나이스 초과근무 상신시
초과근무종별은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시간 휴일에 체크 √ 필요)
- 조기출근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시간에 대해 월간으로 분 단위까지 합산

※합산한 시간은 월간으로 계산하되,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에는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 사용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로 제한한다.

(단,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개인용무 사용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예시

-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 (예) 정규 퇴근시간(18시)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청사 체력단련실에서 5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22시까지 근무를 한 경우
- * 4시간 - 50분 - 1시간 = 2시간 10분 인정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시간 × 시간외근무기준단가*

*시간외근무기준단가: 봉급기준액 × 1/209 × 150%

5.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가.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지급방법

-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시간외근무기준단가* × 10시간

*시간외근무기준단가: 봉급기준액 × 1/209 × 150%

-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무기준단가* × 10시간 × 실제근무일수/15일

*시간외근무기준단가: 봉급기준액 × 1/209 × 150%

다. 근무일수 계산

-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수 계산에서 제외
- 2)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 3)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2)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3)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5)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 및 비상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의한 제1호~제3호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재택근무자에게는 재택근무일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정액지급분은 지급가능).** 다만,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명령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적 지급분 지급 가능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 지급분은 지급 가능)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정액분 포함)을 지급 정지**해야 한다.

2) 고의적 위반 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행위 등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1.19.) 시행 전에

고 의적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회 적발되어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예규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 4)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5)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6)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7)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21.12.9). * 이 법 시행전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

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시]

-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36,920원(6급 공무원 시간당 단가 13,692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684,600원(부당수령금액 136,920원×5배)
 - *가산징수금액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3.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지급 등급 결정 시 활용하여야 한다.
- 2)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당한 초과근무 제보 사례

※ 관련: 초등교육지원과-9174(2024. 4. 11.)

- ▶ 초과근무 시간의 사적용도 사용 사례
 - 주말 등에 교내 냉난방 시설 가동하면서 독서, 실내 운동 등의 개인취미활동
 - 승진 시험(교감자격연수, 장학사, 사무관 등) 준비를 위한 개인학습활동
 - 각종 개인 자격증(기계설비유지 관련, 공인중개사 등) 취득을 위한 개인학습활동
 - 교사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개인학습활동
 - 학교 내 시설(골프연습장, 체육관 등)을 이용한 개인운동 활동
- ▶ 초과근무 신청 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미기재
- ▶ 학생관리, 학교시설물관리 등의 관행적인 초과근무 실시 사례
- ▶ 초과근무 중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 및 심야복귀 후 초과근무확인 사례
- ▶ 초과근무를 대리로 확인하는 사례